

April
2025

NEWSLETTER

공정거래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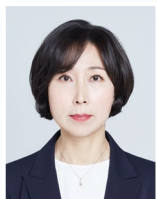
Antitrust & Competition Group

CONTACT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an.jeong@leeko.com

변호사 심주은

T: 02.772.4988

E: jueun.shim@leeko.com

변호사 선정호

T: 02.772.4676

E: jeongho.sun@leeko.com

변호사 이미지

T: 02.772.4752

E: miji.lee@leeko.com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해외 현지법인 설립 통한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4. 1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025. 5. 8.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관계로 입증된다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점입니다.

하도급법을 적용하려면 법이 정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 실무상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역시 국내법인이 아니므로, 해외 현지법인 간 거래나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간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법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외국법인 간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거래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공정화지침의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하도급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확장하여,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지만 그 실질은 국내 기업 간의 하도급관계인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거래의 예시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상 해외 법인이 당사자인 하도급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실질적 관계 판단 시 고려할 특별한 사정	
1	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2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3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4	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5	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 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

2. 시사점

공정위는 그간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초에는 해외 기업, 다국적 합작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국내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거래’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이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국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국내기업간 하도급거래로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거래가 실질적으로도 국내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등이 계약 체결을 독립적으로 진행한 점, 국내 법인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 등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인들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다만, 실질적인 하도급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및 해석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